

【 2016.02.18(목) 강원일보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2016년도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
(회장: 오인철)는 17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업
계 및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건설협회 운영위원회 최형규씨 사무처장 임명



대한건설협회 도회 사
무처장에 최형규(58·사
진) 전 동해안권경제자
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이 임명됐다.

건설협회 도회는 17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세철 사무처장의 후임인 최 전
국장의 '강원도회 사무처장 임용 제청
의 건'을 통과시켰다.

최 전 국장은 앞으로 대한건설협회
도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달 2일부터
사무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신임 최 처장은 양구고와 한국방송
통신대, 일본 오비린대 등을 졸업하고
도 경제정책과장, 글로벌사업단장 등
을 역임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새의자 •

최형규 대한건설협회 도회 사무처장



최형규(58) 대한건설협회 도회 신임 사무처장은 “38년 공직경험을 살려 도내 건설협회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강원경제 역시 연초부터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원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양구 출신인 최 사무처장은 양구고, 한국방송통신대, 일본 오비린 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개발본부장, 도글로벌사업단장, 경제정책과장, 지식산업과장,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안은복

올 公共 시설공사 29.8兆 나온다

조달청 집계, 지난해보다 5.6% 줄어… SOC예산 축소에 물량난 심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올 한 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 규모가 지난해 대비 5.6% 줄어든 총 29조8000 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시설사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국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발주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치열한 수주경쟁과 더불어 수주난이 우려된다.

조달청(정장 김상규)은 17일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의 발주계획을 집계한 '2016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예시)'를 공표했다. ▶관련기사 8면

계획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예시하는 국방부와 한전, LH 등을 제외한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 규모는 총 2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예시 규모 31조6000억원 대비 약 1조8000억원(5.6%)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올해 SOC(사회기반시설)예산 축소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자체의 시설공사 발주 규모만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발주 규모는 전년 대비 17.4%(1조674억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 또한 작년 대비 1조946억 원(5.9%)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업계의 수주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발주계획 예시 규모를 보면, 우선 국가기관은 지난해 계획(6조131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총 5조638억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신규 SOC 투자 감소로 항만시설과 대학교, 교도소 신축,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크게 줄면서 교육부(5077억원)와 해양수산부(4255억원), 국토부(2439억원) 등의 발주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올해 발주 규모

역시 지난해 계획(18조5469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7조452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철도시설사업과 농어촌 기반시설 사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신규 발주 규모는 작년 대비 3조9927억원이나 줄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설공사도 각각 7319억원과 6238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지자체가 올해 선보일 시설공사는 지난해 6조9133억원 대비 5.5%(3823억 원) 증가한 총 7조29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컨벤션센터와 복선전철, 야구장 건립사업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기관별로는 전남도교육청 2661억원, 대전시 2330억원, 경남도 1844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 여파로 지난해 반짝했던 공공시장이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내수경기 흐름과 마찬가지로 재정절벽 우려도 커 치열한 수주 경쟁과 더불어 심각한 물량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턴키 '부실설계' 업체 제재 강화 추진

국토부, 기술형입찰 활성화 토론회… 심의위원 증원도 검토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부실설계 업체에 일정기간 감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의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설계심의위원 증원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기술형입찰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기술변별력 TF'를 통해 마련한 내용이어서 제도 반영 가능성이 크다.

신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했다. 이는 턴키 등

에서 설계점수 미달(60점 미만)이나 설계 부적격평가를 받은 업체에 향후 다른 입찰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이다. 감점은 1~2점, 제재기간은 1~2년이 제시됐다.

턴키 등의 심의분야별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을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날 발표자료에 대해 "업무보고 때 나온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된 버전으로 보면 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포함해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조달청 집행 신규공사 8.1兆… 지난해보다 14.6% 감소

<중앙조달>

뉴스동보기

올 공공 시설공사 29.8兆

전체 공공공사 발주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조달청을 통해 집행(중앙조달)되는 신규 시설공사 발주금액도 총 8조1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예시 규모 9조5000억원 대비 약 1조4000억원(14.6%)이나 감소한 수치로, 국가기관의 발주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발주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수요기관들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발주 규모는 10조원을 초과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조단위)는 유지할 것이라고 조달청은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연초 예시 규모는



9조5000억원에 그쳤지만 연말 집계된 실집행 규모는 약 1조9000억원 늘어난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1조원 이상의 발주물량 감소가 불가 피할 것으로 보여 중앙조달 공공건설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적극적인 조기발주 및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하고 업계를 측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신규공사 조기집행 목표는 전체의 75%에 달하는 6조1000억원이다.

한편, 수요기관별·발주규모를 보면 국가기관의 올 예시규모는 지난해 5조 5976억원에서 올해 4조6218억원으로 17.4% 감소할 전망이다.

기타기관의 경우에는 1조5234억원에서 올해 1조588억원 규모로, 30.5%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시설공사만 2조4235억원에서 2조4707억원 규모로, 미미한 수준(1.9%)의 증가가 예상된다.

발주규모별 상위 기관으로는 국토부가 2조28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수부(9161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983억원), 법무부(2301억원) 등의 순이 될 전망이다.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지 각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채권자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 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4401 판결)

어느 구성원의 채권자가 조합 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아니라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집행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어느 한 구성원의 채권자가 조합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4401 판결)

민법상 조합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된다.

다만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